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2. . . (제 회)	

법 제 처 직 제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법제처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신속한 검토 및 지원과 의원입법 관련 법무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제정책국에 평가대상조직으로 법제조정정책관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1명(고위공무원단 1명)을 증원하는 대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훈령·예규 등의 심사 및 검토 업무를 담당하는 법제관을 폐지하면서 정원 1명(4급 1명)을 감축하며, 훈령·예규 등의 심사 및 검토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신속한 법령정비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법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 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제처의 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2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법제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12. 9. ~ 12. 12.)

법제처 직제 일부개정령안

법제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발의된”을 “발의되는”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법제관”을 “법제조정정책관 1명과 법제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장”을 “국장 및 법제조정정책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1호 중 “발의된”을 “발의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국회에서 발의되는 법률안 관련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법제 조정·

지원 및 총괄

제15조제2항 중 “39명”을 “38명”으로 한다.

별표 1 중 고위공무원단 “13”을 “14”로, 3급 또는 4급 이하 “221”을 “220”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법제처 정원 2명

(5급 1명, 6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법 제처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2]

법제처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17조제1항 관련)

조직	정원
1. 법제정책국 법제조정정책관	1명
2. 행정법제국 1개 법제심의회	1명
3. 법령해석국 1개 과	5명
4. 법제지원국 1개 과	1명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직무) 법제처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조약안의 심사, 총리령안·부령안 및 훈령·예 규의 심사, 대통령 및 국무총리 의 명에 따른 법령안의 기초, 정 부입법의 총괄, 법령 정비의 지 원, 법령해석(「법제업무 운영 규정」 제26조에 따른 법령해석 을 말한다. 이하 같다), 국회에 서 <u>발의된</u> 법률안의 검토·협의 및 자치입법 지원, 국가법령정 보의 관리·제공 및 그 밖에 법 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2조(직무) ----- ----- ----- ----- ----- ----- ----- ----- ----- -- <u>발의되는</u> ----- ----- ----- ----- -----.
제7조(법제정책국) ① 법제정책국 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u>법제관</u> 4명을 둔다.	제7조(법제정책국) ① ----- ----- <u>법제조정정책관 1명과 법제관</u> -----.
② <u>국장</u> 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 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u>국장 및 법제조정정책관</u> ---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 다.	③ ----- --.
1. ~ 9. (생략)	1. ~ 9. (현행과 같음)
10. 삭제	
11. 국회에서 <u>발의된</u> 법률안에	11. ----- <u>발의되는</u> -----

대한 검토·분석

12.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안 관련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법제 지원

제15조(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생략)

② 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39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③ (생략)

12. 국회에서 발의되는 법률안 관련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법제 조정·지원 및 총괄

제15조(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38명-----

-----.

③ (현행과 같음)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1]

법제처 공무원 정원표(제15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고위공무원단	<u>13</u>	<u>14</u>	+1
3급 또는 4급 이하	<u>221</u>	<u>220</u>	-1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연 락 처	(044) 205 - 2319